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0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아스트라자산운용㈜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418조 제5호에 따른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아스트라자산운용㈜에 과태료 21,600,000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
◦ 아스트라자산운용㈜는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최대주주인 甲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乙, 丙, 丁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. (총 ○건)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418조 제5호